

KSKSKSKS
KSKSKSK
KSKSKS
KSKSK
KSKS
KSK
KS

KS Q 8001

KS

**KS인증제도 —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KS Q 8001:201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5년 6월 3일 제정
<http://www.kats.go.kr>

심 의 : 품질경영·서비스 기술심의회

	성명	근무처	직위
(회 장)	유 춘 번	경기대학교	교수
(위 원)	이 상 복	서경대학교	교수
	김 종 열	리딩경영	대표
	박 정 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 자 원	지식서비스경영원	원장
	서 창 적	서강대학교	교수
	정 낙 훈	한국심사자격인증원	원장
	황 진 자	한국소비자원	팀장
	황 효 수	(주)한국CM기술원	대표
(간 사)	이 응 로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연구관

원안작성협력 : 품질경영시스템(ISO/TC 176) 전문위원회

	성명	근무처	직위
(대표전문위원)	정 수 일	인하대학교	교수
(위 원)	유 춘 번	경기대학교	교수
	고 병 호	한국품질재단	팀장
	김 연 성	기술사인증원	대표이사
	박 문 규	한국선급	소장
	원 순 영	플렉서스코리아	대표
	정 인 석	살롬인터내셔널	대표
	이 수 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선임
	정 낙 훈	한국심사자격인증원	원장
	허 환	국방기술품질원	실장
(간 사)	윤 태 영	한국표준협회	수석연구원

표준열람 :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http://www.standard.go.kr>)

제정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제정 : 2015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5-0184 호

심의 : 산업표준심의회 품질경영·서비스 기술심의회

원안작성협력 : 품질경영시스템(ISO/TC 176) 전문위원회

이 표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과장 박주승 ☎ 043-870-5340)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http://www.kats.go.kr>).

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심의되어 확인,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목 차

머 리 말	iii
1 적용범위	1
2 인용표준	1
3 용어와 정의	1
4 인증신청	3
4.1 인증대상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3
4.2 인증신청 범위	3
4.3 신청서 제출	4
5 최초 인증심사	4
5.1 인증기준	4
5.2 인증심사 일반사항	4
5.3 인증심사 방법	4
5.4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작성 및 확인심사	6
5.5 심사결과 판정기준	6
5.6 인증 결정 및 통보	6
6 인증 계약	7
6.1 인증 계약 체결	7
6.2 인증 계약 내용	7
6.3 인증 계약 종료	7
7 인증서 발급 등	7
7.1 인증서 발급	7
7.2 인증서 반납	8
7.3 인증서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	8
7.4 인증기관 변경	8
8 인증 추가 또는 변경	9
8.1 품목 추가	9
8.2 종류 · 등급 · 호칭 또는 모델 추가	9
8.3 주요 자재 변경	9
9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10
9.1 인증기준	10
9.2 정기심사 일반사항	10
9.3 정기심사 방법	11
9.4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작성 및 확인심사	11
9.5 심사결과 판정기준	11
9.6 인증 유지 결정 및 통보	11
9.7 공장(또는 사업장) 이전 심사	12
9.8 특별 현장조사	12
9.9 지위승계의 신고	12
9.10 자료 제출	13
9.11 제3자의 이의신청 및 처리	13

9.12 KS가 개정된 경우 조치	13
9.13 KS별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조치	14
10 KS마크 등의 표시사항	14
10.1 표시내용 등	14
10.2 표시 방법	15
11 허위표시 등에 관한 조치	15
11.1 KS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조치	15
11.2 인증제품이 KS 등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조치	15
12 인증에 관한 비밀 유지	15
13 인증의 취소	15
13.1 일반사항	15
13.2 인증받은자의 의견제출 및 처리	16
13.3 인증 취소 통보	16
13.4 인증 취소에 따른 조치	16
부속서 A (규정) 인증 분야별 요구사항 작성기준	17
부속서 B (규정) 공장심사보고서	18
부속서 C (참고)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예시	30

머 리 말

이 표준은 광공업품 및 가공기술(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한 **KS Q 8001**, **KS**인증제도 —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이하 “일반 요구사항”이라 한다.)이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이 표준에 특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야별 요구사항(이하 “분야별 요구사항”이라 한다.)을 별도의 표준으로 제정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이 표준 또는 분야별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필요한 관련 규정(이하 “**KS**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KS인증제도 —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KS assessment certification — General certification guide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KS인증)와 인증업무 기준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인증업무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업무 수행의 전 과정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인증의 절차·방법 등이 이 표준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속서 A**에 규정된 분야별 요구사항 작성기준에 따라 분야별 요구사항 또는 인증기관별 KS인증업무규정에 달리 규정할 수 있으며, 이 표준과는 별도로 구성된다.

공장심사 시 적용하는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은 **부속서 B**를 따른다. 다만,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인증기관과 인증받은자 간의 계약은 **부속서 C**에 규정된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예시의 내용 및 양식을 따른다. 다만, 인증분야별 특성에 따라 **5.1**의 인증기준의 범위 내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가감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주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Q ISO/IEC 17000,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 원칙

KS Q ISO/IEC 17020, 적합성 평가 —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 기준

KS Q 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KS Q ISO/IEC 17000에 규정된 용어와 정의 및 다음을 적용한다.

3.1

한국산업표준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KS인증에 관련하여 정부가 고시한 산업표준을 말한다.

3.2

인증심사기준 (certification criteria)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등 제품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제품 인증심사기준을 말하며, KS별로 인증기관이 따로 정한다.

3.3

제품 (product)

KS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3.4

인증신청자 (certification applicant)

KS가 제정되어 있고, 인증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자 중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3.5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KS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3.6

KS인증업무규정 (regulations by the KS certification body)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정한 규정을 말한다.

3.7

인증심사 (certification audit)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 대하여 인증대상 제품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최초 인증심사”, “품목 추가심사” 및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추가심사”를 말한다.

3.8

공장심사 (factory audit)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9

제품심사 (product audit)

제품의 품질이 해당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10

인증심사원 (certified auditor)

산업표준화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3.11

공인시험·검사기관 (certified testing laboratory & inspection body)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KS Q ISO/IEC 17020 또는 KS Q ISO/IEC 17025를 근거) 및 절차에 따라 국제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3.12

확인심사 (confirmatory audit)

공장심사 결과 인증신청자(또는 인증받은자)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인증기관이 현장(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확인하는 심사를 말한다.

3.13

KS인증위원회 (KS certification committee)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등 인증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최종 의사 결정을 위해 인증기관 내에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3.14**KS마크 (KS mark)**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말한다.

3.15**인증받은자 (certified body)**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대상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3.16**정기심사 (regular certification audit)**

인증기관이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제품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17**품목별품질관리단체 (quality control body by product)**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1년 주기 공장심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3.18**공장이전 심사 (transferred factory audit)**

인증기관이 인증받은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3.19**특별 현장조사 (special on-site inspection)**

인증 받은 제품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인증받은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때 인증기관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3.20**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market surveillance and on-site inspection)**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시판품조사)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현장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신청**4.1 인증대상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인증품목(또는 분야)으로 지정된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이하 “해당 인증심사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4.2 인증신청 범위

인증신청의 범위는 신청 제품의 품목에 따라 해당 인증심사기준의 “인증의 구분”을 참조하여 인증신청자가 결정한다.

제품인증은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표준명, 표준번호),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로 한다.

4.3 신청서 제출

인증신청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제품인증신청서 및 인증기관이 KS인증업무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a) ISO 9001의 인증서 사본,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화된 정보(해당하는 경우)
- b)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재료 등) 목록
- c)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목록(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에는 외주가공 업체 현황, 외부 시험·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외부 설비업체 현황 포함)

5 최초 인증심사

5.1 인증기준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가 다음 사항이 모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a) 산업표준화법령
- b) KS(3.1)
- c) 인증심사기준(3.2)
- d) 공장심사보고서(부속서 B)의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 별도의 표준으로 구성된 분야별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요구사항의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
- e) 인증기관이 정하는 KS인증업무규정의 요구사항

5.2 인증심사 일반사항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와 협의하여 공장심사·제품심사 실시계획을 결정하고,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b) 인증기관은 2명 이상의 심사원으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반에 편성하여서는 안 된다.
- c)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부터 인증서 발급 전까지의 기간에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개정 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하거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
- d) 심사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이하, 4개 품목 이상은 3일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개 품목 2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인증심사(1품목에 한함), 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 외주가공 업체나 외부 시험·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 외부 설비업체 현황에 대한 현장확인, 현장시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품목 등 인증기관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 이내) 심사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 e)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결과 5.5의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증신청자가 부적합 평가항목을 개선하여 5.5의 b)에 따라 적합으로 심사결과를 판정할 경우를 위해 인증신청자는 공장심사 시 인증기관에 제품심사 실시예 필요한 시료의 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5.3 인증심사 방법

5.3.1 공장심사

인증심사원은 심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을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완료한 후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받은 공장심사보고서를 5.5에서 규정한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5.3.2 공장심사 일부 면제 등

5.3.1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5.3.3에 따른 제품심사는 부적합하여 인증 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품목)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한 경우와 이미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종류·등급·호칭·모델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보고서(부속서 B)에서 규정한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는 생략(적합 “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ISO 9001 인증기업일 경우에는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은 생략(적합 “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다만, 생략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ISO 인증서,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ISO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 문서화된 정보를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5.3.3 제품심사

5.3.3.1 시료채취

인증심사원은 제품심사를 위해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a) 제품심사를 목적으로 한 제품의 시료는 제품 제조 공장에서 심사 당일 제품 재고 또는 생산 중인 제품 중에서 해당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 b) 인증심사원은 시료채취 내역, 품질시험의뢰서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3.3.2 제품시험 의뢰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이 채취한 시료를 봉인한 후에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이 동일 조직 내에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 조직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시험항목의 특성상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료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자의 제품 제조공장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장비를 갖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제품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의 운반을 위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인시험·검사기관은 품질시험을 의뢰 받은 경우에는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인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5.3.3.3 제품 품질시험 일부 생략

인증신청자가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a)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 b)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KS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5.4 부적합 보고서·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작성 및 확인심사

인증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증거 등을 첨부하여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심사반의 회의를 거쳐 부적합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b)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에서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 공장심사보고서에 규정된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신청자에게도 부적합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c) 인증기관은 부적합 보고서의 일반품질 평가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은 인증신청자가 서류로 제출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확인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공장심사보고서와 함께 KS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일반품질 평가항목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d) 핵심품질 평가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은 개선조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심사하여야 하며, 개선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공장심사보고서와 함께 KS인증위원회에 제출하고,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5.3.1에 따라 공장심사를 다시 실시한다.
- e) 제품심사는 공장심사가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 실시하며, 제품시험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함께 KS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5.5 심사결과 판정기준

심사결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신청자가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완료할 때까지 KS인증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
- b) a)의 부적합 평가항목이 개선될 경우, 공장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 c) 인증신청자가 부적합 평가항목을 공장심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신청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 d) 인증기관은 제품심사 결과,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5.6에 따라 인증 불가 결정을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인증신청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5.6 인증 결정 및 통보

인증의 결정은 5.5의 심사결과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KS인증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인증신청자에게 문서, 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인증 계약

6.1 인증 계약 체결

인증기관은 5.6에 따라 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신청자와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 계약(부속서 C)”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a) 제품인증서의 발급 시 기재사항(7.1)
- b) KS마크 등 표시사항(10.)

인증기관은 일반인이 해당 인증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6.2 인증 계약 내용

인증기관은 인증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KS의 인증업무에 관한 계약임을 명시
- b) 인증 계약의 유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c) KS마크 등의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
- d) 인증받은자가 인증 받은 제품을 광고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증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
- e)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인증 받은 공장·사업장·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심사할 수 있다는 사항
- f) 인증받은자가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불만을 받은 경우의 이의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g)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h) 인증기관이 취할 조치에 대해 인증받은자가 행하는 청문(인증받은자의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i) 인증 취소, 인증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 j)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k) 심사주기 준수, 수수료 납부 등 인증기관이 KS인증업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6.3 인증 계약 종료

인증기관은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인증받은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 a) 인증 계약의 종료일 및 인증 번호
- b) 종료한 인증 계약에 관한 인증받은자의 공장명(회사명) 및 소재지
- c) 제품인증서의 발급 시 기재사항(7.1)
- d) KS마크 등의 표시사항(10.)

또한 인증기관은 일반인이 해당 인증 종료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7 인증서 발급 등

7.1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은 제품이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여 인증신청자와 6.에 따른 인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증번호, 제조업체명, 대표자 성명, 공장 소재지, 인증제품의 표준명 및 표

준번호, 인증제품의 종류·등급·호칭·모델,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인증서 교부일, 인증기관명 등을 기재한 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동일인이 같은 KS에 대하여 여러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다.

7.2 인증서 반납

7.1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a) KS가 폐지된 경우
- b) 인증대상 제품의 품목 지정이 취소된 경우
- c)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 d) 폐업한 경우
- e) 인증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 f) 인증 관련 계약이 해지된 경우
- g)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3 인증서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

7.1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1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인증서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4 인증기관 변경

인증받은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인증받은자가 인증기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인계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인수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받은자가 기록 인계에 동의하여야 한다.

비고 인증받은자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라 함은 인증 유지에 필요한 관련 기록을 말한다.

- b) 인계인증기관은 정기심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증받은자를 인수인증기관으로 인계할 수 있다.
- c) 인수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한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5.3.1 및 5.3.2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인증기관은 제품의 품질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5.3.3의 심사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실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d) 인수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와 6.의 인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e) 인증받은자는 a), b), c)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 발급받은 인증서를 인계인증기관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인증받은자로부터 인증기관 변경 신청을 받은 인계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변경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변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요청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인증지원사무국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을 받은 KS인증지원사무국은 인증받은자로부터 인증기관 변경 사유를 제출 받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인증의 우려가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비고 인증기관의 변경에 대한 합리적 사유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인증받은자가 KS인증 이외에도 다른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심사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 인증받은자가 위치한 공장 또는 사업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증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타 KS인증지원사무국에서 인증기관 변경 신청사유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8 인증 추가 또는 변경

8.1 품목 추가

인증받은자가 품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5.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받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5.6의 인증결정 시 6.에 따라 인증계약을 변경하고 7.에 따라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2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추가

인증받은자가 이미 인증 받은 제품(품목)의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을 추가할 목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5.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당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에 관한 것에 한한다.)하여 그 결과를 인증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장심사 시 심사사항의 일부(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의 평가를 생략(적합 “예”로 평가)한다. 다만, 자재 또는 공정·제조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인증기관은 해당 평가항목을 심사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5.6의 인증결정 시 6.에 따라 인증계약을 변경하고 7.에 따라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3 주요 자재 변경

인증받은자가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자재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인증받은자는 제품(품목)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을 기록한 자재관리 목록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b) 인증받은자는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을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자재의 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성능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받은자에게 시험성적서 제출, 제품시험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c)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13.1 c)에 따라 해당 제품(품목)이 KS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9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9.1 인증기준

정기심사의 인증기준은 **5.1**과 같다.

9.2 정기심사 일반사항

인증기관은 정기심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정기심사는 **5.2**를 준용하되, 제품심사에 대한 규정은 제외한다.
- b) 인증받은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은 매년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되, 공장심사에서 적합(일반품질 부적합은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적합으로 보며, 핵심품질 부적합은 제외)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c) b)에도 불구하고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a)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 d) b)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를 면제한다.
 - 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 e) 인증받은자는 b)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기 위해 최초 인증 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f)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이 부도·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때는 **13.1 f)**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g) 인증기관은 정기심사 결과가 **5.1**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 h)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b)에 따른 **3년**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b)의 단서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당해 연도에 한해 면제하여야 한다.
- i) 인증기관은 b)의 단서에서 규정한 **1년** 주기 공장심사 품목과 관련한 품목별품질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질관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심사원 **1인**이 포함되도록 **1년** 주기 공장심사만을 편성하여야 한다.

9.3 정기심사 방법

9.3.1 공장심사

정기심사에서 공장심사는 **5.3.1**에 따라 실시하되, “최근 3개월 이상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한다.)”을 “최근 1년 이상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한다.)”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9.2 c)에 따라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실시하는 정기심사는 최근 3개월(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 기간의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을 적용한다.

9.3.2 공장심사 일부 면제 등

공장심사의 일부 면제 등은 **5.3.2**를 적용한다.

9.3.3 제품심사

정기심사에서는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9.4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작성 및 확인심사

정기심사 시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심사는 **5.4**에 따르되, **5.4 e)**의 제품심사에 대한 규정은 제외한다.

인증받은자는 부적합사항을 개선하는 기간 동안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나, 핵심품질 평가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KS**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인증기관은 **5.4 c)**, **5.4 d)**에 따라 실시한 확인심사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인증받은자에게 추가적인 확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9.5 심사결과 판정기준

심사결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종합 판정되면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KS**인증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다.
- b) a)의 부적합 평가항목이 개선될 경우, 공장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 c) 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과의 계약 또는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부적합 평가항목의 개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고, 기간 안에 개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9.6 인증 유지 결정 및 통보

인증 유지의 결정은 **9.5**의 심사결과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KS**인증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른다.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인증신청자에게 문서, 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7 공장(또는 사업장) 이전 심사

인증제품의 제조 공장(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은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9.3의 정기심사 실시 단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것에 한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증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공장심사보고서(부속서 B)에서 규정한 심사사항 중 공정·제조설비 관리, 제품 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조 공장(또는 사업장) 이전 심사에서의 공장심사 실시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결정 시 6.에 따라 인증계약을 변경하고 7.에 따라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9.8 특별 현장조사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제품이 다음에 해당하여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인증받은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때 비정기적으로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a) 불량 KS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 b)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제3자의 이의 신청 포함)
- c) ISO 9001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심사의 일부를 면제받은 기업이 품질시스템 이행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 d)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 e)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 f)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g)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KS인증제품 출하정지, KS마크 표시 정지 등)에 대한 이행 확인이 필요한 경우
- h) 정부로부터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 i)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KS인증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특별 현장조사의 방법 등은 5.를 준용하되 5.3.2 및 5.3.3.3은 적용을 제외한다.

9.9 지위승계의 신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인증기관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인증서(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b) a)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인증기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10 자료 제출

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a)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b)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c)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d)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정부로부터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e)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
- f)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KS인증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9.11 제3자의 이의신청 및 처리

인증제품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인증제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 2) 인증제품의 명칭,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인증제품의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이 적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인증제품의 제조 공장명 또는 사업장명
 - 4) 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 5) 이의신청의 사유
- b) 인증기관은 a)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인증제품이 해당 KS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해당 인증제품을 교환, 수리, 환불 또는 보상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9.8에 따라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c) 인증기관은 조사결과 인증제품이 해당 KS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9.12 KS가 개정된 경우 조치

인증 제품에 관련된 KS가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인증받은자는 인증제품의 KS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증서 및 재발급신청서(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재발급

이 필요한 경우)

- 2) 개정된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제품 성능·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다만, 표준이 상향 개정된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 3)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 4) KS인증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인쇄물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 5) 기타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b) 인증기관은 a)에 따라 인증받은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에 따라 준용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9.13 KS별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조치

인증 제품에 관련된 KS별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인증받은자는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증서 및 재발급신청서(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2)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 3) KS인증 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인쇄물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 4) 기타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b)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KS인증 제품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a)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받은자가 이행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KS인증 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에 따라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 KS마크 등의 표시사항

10.1 표시내용 등

인증받은자가 해당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a) KS의 명칭 및 번호
- b) KS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c) 인증번호
- d) KS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
- e)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 f) 인증기관명
- g) KS를 표시하는 도표
- h) KS에서 제품의 품목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KS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인증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을 관

리하여야 한다.

인증받은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표시판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10.2 표시 방법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10.1의 KS마크 등을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함을 인증계약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 a) 인증받은자는 인증 계약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b)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인쇄 및 인장, 각인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1 허위표시 등에 관한 조치

11.1 KS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조치

인증기관은 다음의 a)와 b)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정부에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 a)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 b)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11.2 인증제품이 KS 등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조치

인증기관은 9.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심사를 실시하고, 인증받은자는 부적합 평가항목이 개선될 때까지 9.5에 따라야 한다.

12 인증에 관한 비밀 유지

인증기관은 소속 임직원 및 인증심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임직원 중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인증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 인증의 취소

13.1 일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a)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b)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 c) 정기심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 d)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e)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f)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g)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h)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 판정을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i)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13.2 인증받은자의 의견제출 및 처리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인증받은자의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해 **13.1**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b) 인증받은자는 취소 전에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c) 인증받은자는 b)에 의해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d)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KS인증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KS인증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e) 인증받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요청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3.3 인증 취소 통보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해당 인증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a) 인증을 취소한 일자 및 취소 사유
- b) 제품인증서의 발급 시 기재사항(**7.1**)
- c) 표시내용(**10.1**)
- d) 취소한 이유

이 공표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은 일반인이 해당 인증 취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조자의 해당 제품(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13.4 인증 취소에 따른 조치

인증기관은 인증 취소 시 인증받은자로 하여금 해당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a)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게 인증 취소일 이후로 인증표시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제품임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 b)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로 하여금 인증취소일로부터 즉시 해당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용기, 포장 또는 송장에 부착된 **10.1**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유통제품을 수거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속서 A (규정)

인증 분야별 요구사항 작성기준

- A.1** 인증 분야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 경우, 분야별 요구사항으로 정하여야 한다.
- A.2** 일반 요구사항의 규정 내용과 분야별 요구사항의 규정 내용이 다른 경우, 분야별 요구사항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 A.3** 인증 분야별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일반 요구사항의 목차 및 내용을 변경하여 인용할 수 있다.
- A.4** 분야별 요구사항에서는 일반 요구사항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KS Q 8001에 따른다.”라고 기재하되, 일반 요구사항에 규정된 항목 및 내용과 다르게 명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한다.

부속서 B (규정)

공장심사보고서

이 부속서는 제품인증의 공장을 심사하는 보고서로, 인증기관은 다음의 공장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고 1 공장심사보고서의 평가항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비고 2 품목별 특성에 따라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 부속서의 공장심사보고서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공장심사보고서

1 공장심사 현황

회사명(공장)		대표자					
소재지		전화 번호					
		이메일					
표준번호(표준명)		종류 · 등급 · 호칭 또는 모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단위 과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신청일자		심사일정					
심사결과 요약							
심사 결과	심사사항	전체 평가항목 수 (핵심품질)	적합 평가항목 수	부적합 평가항목 수 개선조치 평가항목 수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수 (핵심품질)	종합판정
	1. 품질경영	5(1)					
	2. 자재관리	6(1)					
	3. 공정 · 제조설비 관리	8(1)					
	4. 제품관리	6(2)					
	5. 시험 · 검사설비 관리	3(1)					
	6. 소비자보호 및 환경 · 자원 관리	5(1)					
	계	33(7)					
* 개선조치 평가항목 및 확인심사 평가항목: 공장심사 평가항목 중 ★표시된 핵심품질은 확인심사 평가항목이고, 그 외의 것은 일반품질로 개선조치 평가항목이다.							
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증심사원 성명 (인/서명) 기관명: 인증심사원 성명 (인/서명)							

- 비고 1** 적용근거 및 특례: 이 공장심사보고서의 평가항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 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다만, 인증 품목별 특성에 따라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비고 2** 종합 판정 방법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 비고 3** 모든 평가항목이 적합(“예”로 평가)한 경우, 종합판정을 “적합”으로 한다.
- 비고 4** 심사 시 “아니요”로 판정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 개선조치를 요구한다.
- 비고 5** 신청품목으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인증 받은 기업의 품질경영 평가항목은 평가를 생략하여 모두 “예”로 판정한다. 다만, 생략을 받으려는 인증기업은 인증신청 시 ISO 인증서 및 문서화된 중요 정보(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일반현황

• 종업원(C) 현황

단위: 명

총인원(합계)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 공통 생산현황

총 자본금	백만 원	공장 판매실적(A)(연)	백만 원
경상 이익(B)(연)	백만 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 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 원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KS보유수	종	기타 인증 수	의무 ()개
			임의 ()개
기타 생산품		제품에 대한 원자재의 원가 비율	%
원자재 공급업체의 독과점 상태	상 (), 중 (), 하 () (해당란에 ○표 하시오.)		
회사 연혁			
특기 사항			

• 품목별 생산현황

표준 번호	KS	KS	KS
생산 능력(연)	(단위)	(단위)	(단위)
생산 실적(연)	(단위)	(단위)	(단위)
판매 실적(연)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수출 실적(연)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KS제품 생산계획(연)	(단위)	(단위)	(단위)
소요 원자재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 (해외기업에 한함)	(단위)	(단위)	(단위)
	US\$	US\$	US\$
※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품목별 생산현황” 표를 복사하여 다음 페이지에 추가 작성 요망			

3 공장심사 평가항목

1. 품질경영: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 ISO 9001 인증기업은 품질경영 관리 평가항목(1.1~1.5) 모두 적합(예)으로 평가		적합여부	
1.1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 전체 차원의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경영책임자: 인사권, 예산집행권, 자원의 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장(회사)의 최고위자			
1.2 [★ 핵심품질] KS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중간·인수검사 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 작업장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KS			
1.3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자체점검 주기(내부심사 등, 년 1회 이상) • 품질경영 계획은 품질방침 및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의 등 포함			
1.4 품질경영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품질관리담당자 독립적 운영 시 적합(예)으로 평가			
1.5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소집단 활동(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2. 자재관리: 일반품질(5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2.1 [★ 핵심품질]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 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2.2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KS를 활용하여 KS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2.3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험 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시험항목) 등을 규정 • 자재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			

2.4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재를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 적합(예)으로 평가 -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2.5 자재 인수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2.6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일정주기를 정하여 합격률, 사용 중 자재 부적합(품)률, 제품품질과 직접관련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재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조 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		
3. 공정 · 제조설비 관리: 일반품질(7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3.1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KS에서 정하거나 제품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외주공정·업체 선정기준,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보유: 소유 또는 배타적 사용이 보장된 임차)		
3.2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3.3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주요 공정관리 항목 에 대한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공정은 적합(예)으로 평가		
3.4 [★ 핵심품질] 공정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작업표준에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 시 조치사항, 작업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제작업 내용과 일치 여부 -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 활용		
3.5 부적합품은 적정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유형별 부적합 건본 보유 및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확인		

3.6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 배치 상태가 합리적인가?	예 ☐	아니요 ☐
* 비교 - 제조설비: 제품생산이 가능한 성능과 제원 및 용량을 구비 - 공정관리 사내표준에서 외주가공에 대하여 적합하게 규정·관리하고 있는 제조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좋다.		
3.7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측정설비는 적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3.8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유회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유회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유회유류의 선택기준, 유회유류의 양, 유회주기, 폐유회유류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실시(설비관리 규정에 포함 관리 가능) - 설비유회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4. 제품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2항목)	적합여부	
4.1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 외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합(예)으로 평가		
4.2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로트 품질 보증 규정: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 - 공인시험·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		
4.3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KS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검사 후 합격·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공인시험·검사기관 의뢰 항목의 성적서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주기(횟수)에 일치되는 수만큼 보유하여야 한다.		
4.4 [★ 핵심품질]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4.5 [★ 핵심품질]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KS 표준에 적합하고, 과거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결과와 평균값과 비교하여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 값 한계 내에 있는가?		
* 비교 • 품질검사 결과 과거 적용기간: 인증심사 3개월, 정기심사 12개월,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심사 3개월 •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 항목의 결정은 KS별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중 1개로 한다. • 현장 입회시험이 어려운 중요 품질항목은 시료채취 후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 ☐	아니요 ☐
4.6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데이터 분석(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 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의 분석 여부)		
5. 시험·검사설비 관리: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해당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여부
5.1 [★ 핵심품질] KS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 비교: 시험·검사 설비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적용 •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는 해당설비로 실시하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주기는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수준과 동일한 횟수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보유 • 시험검사 주기를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따름.	예 ☐	아니요 ☐
5.2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 비교 • 환경(온도, 습도, 조명, 전기, 수도시설 등), 시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확보 여부 • 설비관리항목(점검항목·점검 주기·점검방법 등)	예 ☐	아니요 ☐
5.3 시험·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정성적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정결과를 측정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 비교 •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 교정 또는 표준물질인증서의 성적내용(불확도 또는 보정값)을 측정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화학 분석 장비의 경우, 인증표준물질과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	예 ☐	아니요 ☐

6.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6.1 [★ 핵심품질]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KS Q ISO 10002(품질경영 — 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해외 인증업체는 한국 내 판매업체가 소비자불만 처리 업무를 수행 - 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 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검사, 출고일시, 판매장소 등 확인			
6.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적정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제품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KS별 인증심사기준의 표시사항을 제품 및 포장에 표시			
6.3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 보건,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안전·보건: 전기·기계 안전요건, 종업원의 안전장비 보급, 안전관리 교육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작업장 환경관리(대상, 범위, 기준, 주기, 평가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6.4 사내표준에 따라 임직원의 사내·외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품질경영 부서의 팀장급 이상 경영간부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였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KS Q 10015(품질경영 — 교육훈련 지침)를 토대로 규정 - 계획: 연간 계층별·분야별(자재·공정·제품품질·설비관리·제품생산기술 등), 실시: 최근 3년간 실적 확인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 경영간부의 30% 이상 교육이수 및 미이수 경영간부에 전파교육 완료 시 적합(예)으로 평가			
6.5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전임자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업무 공백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만 인정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및 직무에 필요한 지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및 시행규칙 별표 8)			

4 자재 관리 목록

번호	자재명	용도	규격(Spec.)	공급업체	변경사항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승인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5 시료채취 내역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 현황

가. 시료채취 내역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호칭·모델	재고량	시료크기	시료수 (로트번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나. 샘플링(시료채취) 방식:

다. 공시체 제작방법(해당하는 경우)

- 공시체 제작방법:
- 공시체 규격:
- 제작자:

라. 시험의뢰처: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6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				
회사명 (공장)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 · 등급 · 호칭 · 모델	
심사일정			조치기한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 구분		부적합 내용	담당 심사원
	일반 품질	핵심 품질		
	☐	☐		
	☐	☐		
	☐	☐		
부적합 수	합계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기타 개선 권고사항				
비고 공장심사보고서의 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7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회사명(공장)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 · 등급 · 호칭 · 모델		
심사일정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 구분		부적합 개선조치 요약 및 첨부문서 번호		담당 심사원
	일반 품질	핵심 품질			
	☐	☐			
	☐	☐			
	☐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공장)		대표자		(인/서명)	
인증기관장 귀하					
※ 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첨합니다.					

부적합 개선조치 검토 결과 ※ 이하는 심사원이 작성합니다.			
부적합 대책 검토 종합의견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	심사원	(인/서명)
		심사원	(인/서명)

부속서 C (참고)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예시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인증번호:

계약 대상 인증 구분:

○○○○(인증받은자 이름)(이하 “갑”이라 한다.)와 ○○○○(인증기관 이름)(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이 갑에 대해 인증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이하 이 계약을 “인증 계약”으로 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
KS의 인증
2. 인증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증된 것을 증명하는 을이 갑에게 발행하는 문서
3. KS마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4. 제품 또는 서비스
을이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계약에 의해 인증되는 갑이 제조한 제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5. 공장 또는 사업장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및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6. 공장심사
인증신청된 갑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KS 및 KS별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
7. 제품심사
인증신청된 갑의 제품품질이 해당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
8. 사업장심사
인증신청된 갑 사업장의 서비스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
9. 서비스심사
인증신청된 갑 사업장으로부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 등을 대상으로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
10. 정기심사
을이 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갑의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을의 조치
11. 인증범위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품목(종류·등급·호칭 또는 해당하는 경우 모델 포함)의 표준명, 표

준번호 또는 서비스 분야의 표준명, 표준번호

12. 정부가 정하는 인증기준
 - 1)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규정
 - 2) KS인증제도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KS
 - 3) 품목별(분야별) KS
13. 율이 정하는 인증기준

인증기관이 정한 KS별 인증심사기준 및 KS인증업무규정

제2조(권리 및 의무)

1. 율은 갑에 대해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의 범위에 대해 이 계약에 근거해 KS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한다.
2. 갑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3. 갑은 계약서·납품서 또는 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서비스가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4. 갑은 제품심사 시 율에게 제공한 시험용 제품 등과 동일 조건에 대해 인증 제품 등이 제조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5. 갑은 율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증을 받고 있지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갑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율이 갑에 대하여 실시보고를 요구하거나 갑의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율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또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7.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또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와 관련되는 율의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해당 비용의 금액은 율이 별도로 정하는 KS인증업무규정의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율이 심사의 일부를 율과 계약에 의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정한 수수료지급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3조(KS마크 등의 표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갑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KS의 명칭 및 번호
2. KS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등급·호칭 또는 해당하는 경우, 모델(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번호
4. KS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 표시에만 해당한다.)
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인증기관명
7. KS를 표시하는 도표
8. KS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9. 기타 율의 인증기준에 정한 사항

제4조(KS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 동의의 조건 및 범위)

1. 을은 갑에 대해서 갑이 제1조 11항의 정부가 정하는 인증의 기준 및 12항의 을이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고 제2조 4항, 5항, 6항, 7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 제품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 서비스는 계약서·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 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한다. 갑은 인증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가 있다.
2. 갑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인증 제품 또는 사업장에서 제공된 인증 서비스에 한해서 KS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
3. 갑의 KS마크의 표시는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인증 계약의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 인증의 취소 또는 제25조에 의해 이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이 계약의 체결일부터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을의 정기심사 실시 결과 갑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해당 유효기간은 동일 조건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도 동일하게 처리하되, 인증 계약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험용 제품 등의 제공)

갑은 을이 제품심사 시 시험용 제품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을은 갑에 대해 시험 등에 의해 생긴 시험용의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정기심사)

1. 을은 갑의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 인증계약에 의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제품인증의 경우, 정기심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 수준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품목은 1년마다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3년 정기심사와 1년 정기심사가 중복되는 해에는 1년 정기심사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정기심사는 최초 인증 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인증 경우, 정기심사는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매 2년마다 정기심사를 하는 경우,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고시한 분야에 대한 서비스심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정기심사는 최초 인증 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을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은 갑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사전에 갑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3. 을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기간 종료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확인을 위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 심사를 할 수 있다.
4. 또한 을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특별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 (1) 불량KS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제3자의 이의신청 포함)
 - (3) ISO 9001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심사의 일부를 면제받은 기업이 품질시스템 이행이 부적합 것으로 판단된 경우,
 - (4)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 (5) 인증제품 제조(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의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 (6)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7)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KS인증제품 출하 정지, KS인증서비스 제공 정지, KS마크 표시 정지 등)에 대한 이행 확인이 필요한 경우
 - (8) 정부로부터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 (9)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KS인증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5. 갑은 을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 시간 내에 을이 필요로 하는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관한 사내 표준, 관리 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 검사 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6. 을은 정기심사 시 갑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종업원에 적용되는 안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을은 갑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 경우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갑은 정기심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의 범위 등의 추가 또는 사업장 등의 변경의 조치)

인증제품(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또는 인증서비스에 관하여 인증 범위의 추가 및 사업장 등의 변경 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갑은 이미 인증 받은 품목의 제품에 대한 그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을 추가하여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을에게 인증의 범위 추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해당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해당 추가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이 경우, 공장심사 심사사항의 일부(품질경영 관리,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및 제품심사를 거쳐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을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고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제품인증의 경우, 갑은 공장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을에게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해당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해당 변경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인증의 경우, 갑은 사업장을 변경·추가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사업장의 변경·사업장의 추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변경·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인증서를 정하여 재발급하고, 변경·추가 부분에 관한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거쳐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표준화법령 규정,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 등 정부 및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

제1조 11항 또는 12항이 변경된 경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통보방법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1. 갑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갑은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KS인증 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검토결과 KS인증 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산업표준화법령 규정 및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이 변경했을 때는 을은 신속하게 갑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고 해당 변경에 의해 인증한 갑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관리체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취지를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공표 등)

1. 을은 갑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을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이 인증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 (1) 인증번호
 - (2) 제조업체명
 - (3) 대표자 성명
 - (4) 공장 소재지
 - (5)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6)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 (7) 인증서 교부일
 - (8) 인증기관명
2. 을은 갑의 서비스가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을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이 인증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 (1) 인증번호
 - (2) 업체명
 - (3) 대표자 성명
 - (4) 소재지
 - (5) 인증서비스대상(표준명, 표준번호, 분야)
 - (6) 사업장 및 소재지(사업장명, 소재지)
 - (7)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 (8) 인증서 교부일
 - (9) 인증기관명
3. 을은 갑의 제품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나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다음 사항에 대해 을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 (1)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번호
 - (2)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제조업체명
 - (3)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대표자 성명
 - (4)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공장 소재지

- (5)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6)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 (7)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서 교부일
 - (8)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기관명
 - (9) 취소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이유
4. 을은 갑의 서비스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나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다음 사항에 대해 을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 (1)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번호
 - (2)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업체명
 - (3)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대표자 성명
 - (4)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사업장 및 소재지(사업장명, 소재지)
 - (5)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서비스(표준명, 표준번호, 분야)
 - (6)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 (7)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서 교부일
 - (8)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기관명
 - (9) 취소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이유

제11조(심사 등에 대한 손해)

을은 심사 시에 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인증업무의 위탁)

을은 갑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심사기관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위의 승계)

갑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4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의 처리)

1. 갑은 을이 인증을 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 대해 제3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갑과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
2. 을이 제3자에게 손해 배상 등 기타의 부담을 질 경우, 갑은 을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구상권에 부응하여 즉시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3. 을은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분쟁에 관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이 해당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유지)

을은 갑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정보에 대해 을의 인증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 근거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KS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조치)

을은 갑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갑은 시정을 완료한 후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을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2.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을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 받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의 계약서,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인증 받은 제품(서비스) 이외의 제품(서비스) 등의 광고에 해당 제품(서비스)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되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7조(KS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시정조치)

1. 을은 갑의 공장 또는 사업장이 제16조의 KS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갑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을은 해당 시정조치 요청 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가 갑으로부터 이뤄지지 않거나 보고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인증 받은 제품 및 서비스가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1. 을은 갑의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가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및 확인심사·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갑은 핵심품질 평가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KS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갑은 부적합한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KS마크를 표시하는 인증제품을 출하해서는 안 되고 부적합한 인증서비스에 대해서는 KS마크를 표시하여 제공해서도 안 된다.
3. 을은 갑이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 등이 해당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의 취소)

1. 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2)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 (3) 정기심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5)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2. 을은 1항의 인증 취소 외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 (2) 제17조 3항에 따른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 제18조 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판정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갑이 을에 대한 채무 결제(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를 이행할 수 없을 때
 - (5) 갑이 을과 체결한 인증계약에 위반한 때

제20조(인증받은자의 의견 제출 절차)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취소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해당 인증의 취소에 대해서 이의 신청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증취소를 최종 결정한다.

제21조(인증의 취소와 관련되는 조치)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해당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 등(서비스의 경우, 계약서·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 등)에 KS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을에 대한 갑의 기타 보고 의무)

갑은 이 인증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고 후 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자가 그 제조 또는 제공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정부로부터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
6.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KS인증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제23조(갑에 대한 을의 기타 통지 의무)

을은 이 인증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 승계시키는 경우, 지위승계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2. 을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반납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3. 을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인증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즉시

제24조(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1. 갑이 을에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을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2. 갑은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 받은 수수료의 1/2를 반환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갑이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 개시 이후와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은 후에 인증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25조(인증 계약의 해제)

을은 갑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인증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을에게 문서로 이 계약의 해제를 신청하여 을에게 도착했을 때
2. 이 인증 계약 제19조에 의거하여 을이 갑의 인증을 취소할 때
3. 갑과 을의 사이의 신뢰 관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26조(불가항력에 의한 인증 계약의 종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을의 인증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이 인증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 관례를 따르되,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8조(합의 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을”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기타)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날인 후 그 1통을 보유한다.

인증 계약 체결 일: ○○년 ○월 ○일

갑: 주소
회사명(공장 또는 사업장) ○○○○
대표자명 ○○○○

을: 주소
인증기관 이름 ○○○○
대표자명 ○○○○

한국산업표준

KS인증제도 —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발간 • 보급

한 국 표 준 협 회

153-78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16층)

☎ (02)2624-0114

☎ (02)2624-0148

<http://www.kssn.net>

KSKSKS
SKSKS
KSKS
SKS
KS
SKS
KSKS
SKSKS
KSKSKS

ICS 03.120.10

2015-07-10, 씨티전기(주)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불법 복사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